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 권 정 임 ■

요약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화대화원칙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인다.

둘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킴을 보인다.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핵심원칙은 공유원칙이다. 그런데 이 공유원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다른 두 원칙은 이 공유원칙과 함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 원칙 및 그들의 관계를 엄밀하게 연구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된 유형의 하나로 재구성한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가 사실상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구현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가 무엇보다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함으로써, 그의 공유사회, 곧 최적 자본주의가 모순과 난점에 봉착함을 보인 것이다. 또한 미드(J. Meade)의 공유사회모형을 비판적으로 변형한 모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 제 : 사회·정치철학, 분배정의론, 기본소득론

검색어 : 판 빠레이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공유사회, 공유지, 기본소득

I. 들어가며

실질적 자유지상주의(Real-libertarianism)를 대변하는 대표작,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for All*)(1995)에서 판 빠레이스(Van Parijs)가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분배정의의 주요원칙은 다음 세 가지다.¹⁾

첫 번째는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실질적 자유를 위한 “수단”(Van Parijs, 1995: 5) 또는 “기회”(같은 책: 22)의 축차적 최소극대화(leximin)원칙이다.²⁾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efforts)의 산물에 대한 소유는 정의롭다는 노력소득원칙이다. 세 번째는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천부(external endowments)나 외적 자산(assets)에 대해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공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분배정의의 이 세 원칙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연구에 기초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분배정의론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형성함을 보일 것이다.

둘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을

-
- 1) 여기서 ‘주요원칙’은 판 빠레이스가 공정하다고 보는 개인소득의 두 형태, 곧 공정한 기본소득과 개인의 생산적 노력에 따른 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나 원칙들 중에서, 소득의 이 두 형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칙을 의미한다. 앞으로 ‘원칙’으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이 글에서 서술되는 원칙들의 순서는 중요성과는 무관하다. 서술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 2)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원칙’은 앞으로 ‘최소극대화원칙’으로 축약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축차적 최소극대화원칙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통해,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킴을 보일 것이다.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핵심원칙은 외적 자산 또는 공유지(communs)³⁾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원칙이다. 그런데 이 공유원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다른 두 원칙은 이 공유원칙과 함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한다. 이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공유원칙에 기초하는,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 원칙 및 그들의 관계를 엄밀하게 연구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된 유형의 하나로 재구성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가 사실상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구현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무엇보다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함으로써, 그의 공유사회, 곧 최적 자본주의(optimal capitalism)가 모순과 난점에 봉착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미드(J. Meade)의 공유사회 모형을 비판적으로 변형한 모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이 글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어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이 세 원칙들의 일관된 논리적인 체계로 재구성할 것이다. 3절에서는 2절에서의 연구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

3) ‘공유지’란 자연자원, 문화 등과 같이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자연적·역사적·사회경제적 자원 내지 재화를 포괄한다(곽노완, 2016: 195). 오스트롬(E. Ostrom)을 기원으로 하는 공유운동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키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를 재구성함과 아울러, 그가 제시하는 공유사회를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한다.

2.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

1)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에서 시작하여,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실질적 자유’와 ‘최소극대화 원칙’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 후자부터 살펴보자.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론에서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분배정의의 원칙의 하나로 최소극대화 원칙을 채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그의 「기본소득과 사회정의」(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2010)에 기초할 때, 이 이유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ism)라는 그의 근본적인 윤리적 관점에 연계하여 추론할 수 있다.

판 빠레이스는 자신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로, 즉 “자유주의자”이자 “평등주의자”로(Van Parijs, 2010: 3) 제시한다. 자신의 윤리적 관점이 좋은 삶에 대한 특정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이며, 삶과 관련되는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자”라는 것이다(같은 글). 그렇지만 『모두를 위한 실질

적 자유』에서 명시하듯, 사실 그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다”(Van Parijs, 1995: 1)고 본다. 따라서 그에게 ‘자유’는 ‘평등’보다 우선적이다. 이를 유념하면서, 그의 평등주의를 살펴보자. 최소극대화 원칙이 그에게서 무엇보다 ‘평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판 빠레이스는 개인의 선호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본다.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때, 개인들의 선호나 선택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그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결과평등주의(outcome-egalitarianism)가 아니라 기회평등주의(opportunity-egalitarianism)를 옹호한다(Van Parijs, 2010: 3). 다른 한편 그는 불평등의 시정이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상태보다는, 특정 사람들이 “정의로운 방식으로”(justly) 더 많이 소유하는 상태를 바람직스럽게 본다. 이런 측면에서 “경직된 평등주의”(strict-egalitarianism)가 아니라, “효율성에 민감한” “관대한 평등주의”(lax-egalitarianism)를 옹호한다(같은 글). 동시에 그는,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자신의 관점에 합당하게, 이러한 평등이 누군가의 자유나 존엄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조건을 부가한다(같은 글).⁴⁾ 결국 그의 평등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전제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효율성에 민감한” 기회평등주의로 요약된다.

‘축차적 최소극대화’란 판 빠레이스가 이처럼 정의로운 방식으로 효율성에 민감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분배정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리에 적용할 때, 정의로운 제도의 선택은 각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좋은 삶을 위한 기회의 증감’을 최하위계층부터 최상위계층까지 축차적으로 비교하여 이루어진다(Van Parijs, 1995: 25 참조). 이 ‘축차적 최소극대화’가 자유

4) 판 빠레이스는 롤스(Rawls)와 드워킨(Dworkin) 역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본다(Van Parijs, 2010: 3).

주의적 평등주의자인 그에게서 분배정의 원칙으로서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롤스의 차등원칙의 의미와 같다. 즉 ‘효율성에 민감한’ ‘불평등’을 통해 최하위계층 또는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의 처지가 모두가 평등한 이전의 상태보다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롭다는 것이다(Rawls, 1999: 108 참조).⁵⁾ 나아가 이때 무엇보다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치/기회의 극대화가 최우선시된다.

이처럼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좋은 삶을 위한 기회의 정의로운 분배원칙으로 ‘최소극대화’를 채택한다는 측면에서,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론은 롤스의 분배정의론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지만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론은 무엇보다 자신이 발전시킨 자유개념 및 그 실현을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롤스의 분배정의론과 달라진다. 이 자유개념, 곧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이라는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의 첫 번째 원칙을 구성하는 또 다른 개념인 ‘실질적 자유’에 대해 살펴보자.

판 빠레이스의 자유개념은 직접적으로는 밀(J. S. Mill)의 자유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킨다.⁶⁾ 이에 따라 그에게 자유는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자유”(Mill, 1859: 2), 곧 각자의 삶에서의 “개인적 주권”(Van Parijs, 1995: 18)을 의미한다. 이때 그는 원하는 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유를 “원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같은 책: 20)으로 정의한다.

5) 최소극대화 원칙이란 게임이론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 여러 대안들의 우열을 그것들이 가져올 최악의 결과에 따라 가리는(Rawls, 1999: 216) 원칙이다. 롤스는 최소극대화 원칙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 규칙”으로, 차등원칙은 “정의의 원칙”으로 규정하여 양 원칙의 의미를 차별화한다(같은 책: 132). 그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선택 규칙에 대해서만 최소 극대화의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같은 책: 133).

6)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곽노완, 2015b: 129 이하 참조.

이 자유개념에 기초하여 판 빠레이스는, “안전”과 “자기소유권”(같은 책: 22)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자유개념을, 원할 수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한 법적·형식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식적 자유”(formal freedom)(같은 글)로 규정한다.⁷⁾ 동시에 원할 수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할 “권리”, 곧 형식적 자유만이 아니라 필요한 “수단”(Van Parijs, 2006: 40)이나 “기회”(Van Parijs, 1995: 22) 역시 보장되어야 함을 부각한다. 결국 그는 자유개념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Van Parijs, 2006: 40), 곧 실질적 자유개념으로 확장한다.

그런데 판 빠레이스에게 자유, 곧 실질적 자유가 “가장 중요”(Van Parijs, 1995: 1)한 “권리”(Van Parijs, 2006: 40)라는 사실은, 그에게 실질적 자유가 모든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평등한 권리임을 함축한다. 그는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한편에서는 형식적 자유의 우선적 준수를 요청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수단의 평등한 분배를 요청한다. 살펴보았듯이 그에게 평등한 분배란 효율성의 상생을 통해 모두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르는, 기회의 평등한 분배다. 그는 이러한 분배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요청한다.⁸⁾ 첫째, 개인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7) 판 빠레이스가 ‘자기소유권’으로 의미하는 것은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곽노완, 2015b: 123 이하)로, 이는 그의 ‘개인적 주권’으로서의 자유개념이 충분히 담보한다. 나아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가 사실상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논리와 정책을 비판하여 해체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같은 글: 117 이하 참조), 그가 ‘자기소유권’이라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8) 기본소득에는 현금형태와 현물형태가 있다. 판 빠레이스를 비롯한 기본소득론자들은 주로 현금기본소득을 논한다. 현물기본소득에 대한 판 빠레이스의 논의를 위해서는, Van Parijs, 1995: 41-45 참조.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실질적 자유의 이념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회평등주의에 걸맞게 기본소득제가 분배결과의 정정보다 기회평등의 보장을 의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의 이득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즉 최소극대화원칙을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판 빠레이스는 가능한 한 가장 큰 실질적 자유를 바람직스럽게 본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최대한의 기본소득”(Van Parijs, 1995: 33), 물론 “지속가능성”(같은 책: 38)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추구한다.

결국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의 첫 번째 계기, 곧 최소극대화 원칙은 그의 실질적 자유개념, 특히 실질적 자유의 수단에 적용됨으로써 롤스의 차등원칙이 갖는 함의와 달라진다. 롤스의 차등원칙은 노동에 기초하는 호혜성⁹⁾을 전제한다. 따라서 그의 차등원칙에 따른 분배는 노동, 최소한 노동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반면 판 빠레이스에게 최소극대화 원칙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자유, 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및 그 수단에 대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권리’와 관련된다.¹⁰⁾ 따라서 그의 최소극대화

-
- 9)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정한 협업체계의 달성을 위해 보다 사정이 좋은 자와 좋지 못한 자 간의 관계 역시 상호 간의 노동에 기초하는 호혜적인 것이라야 한다고 본다. 최소수혜자 역시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사회로부터 급여를 이전받기 위해서, 최소한 노동의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Rawls, 2001: 179). 나아가 그는 모두가 노동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차등원칙 속에 표현”하기 위해 여가를 기본재에 포함시킨다(같은 글).
- 10) 밑에서 계승한 자유개념, 곧 ‘각자의 삶에서의 개인적 주권’에 충실하게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자유가 다양한 소비재 중 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무엇보다 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자유임을 부각한다(Van Parijs, 1995: 33). 이에 따르면 노동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실질적 자유 및 그 수단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에 따른 분배는 무조건적·보편적 기본소득이다. 이런 측면에서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론은, 스스로 표현하듯, “롤스주의의 좌파적 변형”(Van Parijs, 1995: 232)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노력소득원칙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두 번째 원칙, 곧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를 정의롭다고 보는 ‘노력소득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기회평등주의’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충족할 경우 각자의 선호나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판 빠레이스가 강조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그는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개인의 생산적 노력과 소득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같은 책: 167)가 있는 것을 정의롭게 본다. 이때 그가 기초하는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응분의 대가(*desert*) (같은 책: 166 이하)로서의 정의, 또는 그가 공정성에 대한 루터적 기준으로 범주화한 “등가교환으로서의 공정성”(같은 책: 156)이다. 생산적 협업에서의 생산적 기여(*contribution*)와 소득(*benefits*)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같은 책: 157). 이때 ‘소득’은 생산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다. 판 빠레이스는 사회심리학자들에 따를 때 분배와 관련된 일상적 정의에서 응분의 대가로서의 정의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함으로써, 분배정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념에 반할 경우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한다(Van Parijs, 1995: 166).

그러나 판 빠레이스는 생산적 기여와 그 대가로서의 소득 간의 균형을 정의롭게 보는 자신의 입장이 자유지상주의적인 권리원천론만이 아니라,¹¹⁾ 맑스의 노동가치론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본다. 맑스

11) 판 빠레이스가 ‘생산적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의 소득’이라는 분배정의에 대한 루터적 기준을 채택한다는 사실은 그가, 노동이 투하되기만 하면 그 대상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자

의 노동가치론이 갖는 난점에 더하여,¹²⁾ 노동가치론으로는 무엇보다 투자 후의 자본가의 기다림 같은 ‘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생산적 노력/기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같은 책: 163).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판 빠레이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맑스가 보다 낮은 단계의 코뮌주의 분배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각자 그의 노동에 따라”의 외연을, 노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여까지 포괄하도록 “각자 그의 생산적 노력(productive efforts)에 따라”로 확장한다(같은 책: 162). 이어서 “생산적 노력의 함수”에 따른 소득분배를 자신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로 제시한다(같은 책: 165).¹³⁾ 동시에 이 함수관계가 순생산물 전체가 생산적 노력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하는 생산적 노력과 소득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순생산물이 생산적 노력을 “충분히”

유지상주의적인 권리원천론(entitlement theory), 곧 그가 분배정의에 대한 로크적 기준으로 범주화하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비판함을 함축한다. 이 ‘로크적 기준’에 대한 그의 상세한 비판은, Van Parijs, 1995: 151 이하 참조.

- 12) 맑스의 노동가치론의 단점으로 판 빠레이스는, 자신이 맑스의 노동가치의 실체라고 보는 비숙련단순노동 자체(Van Parijs, 1995: 154)가 질적으로 다양하며,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의 가치를 양화하여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같은 책: 156) 등을 든다. 이때 맑스의 노동가치의 실체가 비숙련단순노동인지 여부는 사실 맑스주의 내부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비롯하여,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판 빠레이스의 해석의 진위 여부는 이 글의 관심이 아니다.
- 13) 판 빠레이스는 이때 각자의 생산적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해당개인의 구체적인 노동시간이 아님을 명시한다. 일을 못하거나 게으른 자가 더 많은 보수를 받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각자의 생산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각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Van Parijs, 1995: 165). 이 글의 필자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 다른 한편 자본가의 ‘기다림’ 등이 생산적 노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학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글에서 ‘생산적 노력’은, 무엇이 생산적 노력에 속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사용된다.

(같은 글) 보상하면 되는 “약한 상관관계”(같은 책: 167)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생산적 노력의 수고(burden)를 보상하기 위해 요구 되는 것 보다 많이 생산하는 경우, 모든 것을 생산적 노력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은 생산적 노력을 과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책: 165).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외적 자산에 대한 다음 소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듯이, 이는 특정 개인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이 아니라 자연이나 세대를 이어 집적된 생산수단에 기초하여 발생하거나 증대된 소득의 배타적 소유를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함축한다. 이런 맥락에서 판 빠레이스의 분배 정의의 이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에 대한 소유를 공정하다고 보는 ‘노력소득원칙’이다.

그런데 판 빠레이스에게서 분배정의의 이 두 번째 원칙은 기회평등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또한 기회평등의 충족은, 로머(J. E. Roemer)의 착취개념을 그가 기본적으로 수용하는데서 드러나듯,¹⁴⁾ 그에게 원칙적으로 무엇보다 생산수단 같은 자산(asset)의 평등한 사용을 의미한다. 자신의 순수한 생산적 노력의 산물을 공정한 소유로 인정하는 그의 분배정의의 두 번째 원칙을 고려할 때, 이는 그가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분배정의와 관련된 그의 이 세 번째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14) 로머의 착취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즉 자산이 평등하게 분배될 때 어떤 사람의 처지가 좋아지면 그는 피착취자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는 착취자이다. 그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 착취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본다(Van Parijs, 1995: 174). 판 빠레이스는 로머가 제시하는 자산 및 이에 따른 착취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소간 수정하지만, 로머의 착취개념은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이에 따를 때 판 빠레이스의 착취개념은, 자산의 불평등 또는 불평등한 통제에 기초하여 타인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공유원칙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에서 판 빠레이스가 분배정의의 이 세 번째 원칙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직접적 배경은, 말리부 바다에서 하루 종일 파도타기만을 하는 말리부 서퍼처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지 않으며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에게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분배정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판 빠레이스는 다음의 두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차원은 말리부 서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판 빠레이스를 따를 때 자유주의의 기본신조는,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여가를 갖는 말리부 서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가를 선호하여 노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한다. 판 빠레이스의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는, 롤스의 관련 논의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전개된다. 롤스는 재화만이 아니라 여가(leisure) 또한 복지(welfare)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머스그레이브(R. Musgrave)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여가를 기본재(social primary goods)에 포함시킨다(Rawls, 1993: 181). 이에 따를 때, 말리부 서퍼는 여가의 형태로 기본재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공적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⁵⁾

이에 대해 판 빠레이스는 우선 이러한 롤스의 견해가 결국 노동을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롤스를 따라, 노동 않는 자의 ‘여가’와 최소수혜자인 종일노동자

15) 1988년 파리에서 『정의론』 불어판 출판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 판 빠레이스는 롤스와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 여기서 롤스는 기본소득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한다(Van Parijs, 2010: 2).

의 ‘소득’을 기본재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1년 후 자연적 생산조건의 유리한 변화 등처럼 노동과 무관한 요인으로 소득이 증대하였다고 해 보자. 롤스에 따를 때 이 증대된 소득의 분배에서 노동의지가 없는 자는 배제된다. 그 결과 최소수혜자인 중일 노동자의 기본재는 증대하는 반면, 노동의지가 없는 자의 기본재는 이전과 동일한 여가시간에 머무른다는 것이다(Van Parijs, 1995: 98 참조). 결국 판 빠레이스는, 앞에서 밝혔듯이, 원할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 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권리의 보장(같은 책: 33)을 실질적 자유시장주의, 나아가 자유주의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여, 노동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권리를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¹⁶⁾

판 빠레이스의 논의의 두 번째 차원은, 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나아가, 분배정의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출발점은 공유원칙, 즉 특정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의 사용에 대해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같은 책: 99 참조).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인정이 드워킨의 시초평등에 대한 가정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같은 책: 98).¹⁷⁾ 그렇지만 고대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예시할 수 있듯이,¹⁸⁾ 이러한 인정은 ‘소유’나 ‘평등’

16) 다른 한편 판 빠레이스는 롤스가 여가를 기본재에 포함시키는 것이 결국 기본소득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여가시간에도 최소극대화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저소득계층이 여가시간 없이 하루 중일 노동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도록 급여가 이전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Van Parijs, 1995: 131 이하). 또한 특정한 사회적 지위의 재임자가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 향유한 여가시간이 기본재에 반영됨으로써, 노동 않는 자가 롤스의 차등원칙에 따라 급여를 이전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Van Parijs, 2010: 7).

17) 드워킨의 ‘시초평등’에 대해서는 곽노완, 2015a: 74 이하 참조.

18) “자연의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 공기,

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전통의 핵심전제의 하나로, 오늘날 공유원칙을 인정하는 공유주의자들과 다수의 기본소득론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변된다. 결국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론은 사실상 공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분배정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 빠레이스의 주장은 바로, 이처럼 공유되는 외적 자산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다(같은 책: 100). 즉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정확하게 말해서, 축차적 최소극대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같은 글). 또한 이에 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자가 받는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 빠레이스에 따를 때 이처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자산, 곧 공유지는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모든 자산, 곧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곽노완, 2013: 24)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공유주의자들에서처럼 판 빠레이스에게도 자연, 특정개인의 노력의 산물로 환원되지 않는 부, 과학과 “기술”을 포함하는 “공유지식”(common knowledge)(Van Parijs, 1995: 104) 등은 대표적인 공유지다. 그런데 그는 정규직 일자리(job) 역시 “모두가 평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외적 자산의 공동풀(pool)”(같은 책: 129, 곧 공유지로 본다. 이는 그가 정규직 일자리를 특정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기회와 자산으로 봄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는 롤스와 마찬가지로(Rawls, 2001: 75) 재능 또는 내적 천부는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 내적 천부를 공유지로 볼 경우 이는 무엇보다 형식적 자유를 침

흐르는 물, 바다, 그 바다의 해안 또한 모든 강과 항구도 공공물이며 따라서 항구와 강에서 낚시를 할 권리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권리다. 그리고 국가의 법에 따라, 해안의 이용도 공공의 권리이며 같은 식으로 바다 자체도 그러하다. 해변에서 바다낚시를 할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다.**”(Bollier, 2014: 135에서 재인용, 강조는 원문)

해하기 때문이다.(Van Parijs, 1995: 64)¹⁹⁾ 다른 한편 그가 로머의 착취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확장한 자산들 중에서 ‘생산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곧 한편에서의 특정개인의 신체에 체화된 ‘기술’(skill) 및 다른 한편에서의 인종, 젠더, 세대, 연령처럼 생산적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status) 및 ‘건강’(같은 책: 175 이하) 또한, 그의 이론에 따를 때, 공유지로 보기 어렵다. 체화된 기술의 경우 이는 개인의 재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를 공유지로 볼 경우 형식적 자유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유형의 자산의 경우, 그가 이 두 유형의 자산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사실상, 모두의 평등한 권리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동의할 정도로 불리한 지위에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예외적이고 추가적인 보상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 빠레이스가 전제하는 이러한 공유지 및 이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부각할 때, 각자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적 자산에 대해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설정하는 그의 분배정의의 세 번째 원칙은,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라는 의미에서의 ‘공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19) 내적 천부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에서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통해, 재능이 뛰어난 자들에 대한 ‘선망’을 비롯하여 재능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보상될 것이라고 본다(Van Parijs, 1995: 75 이하). 다만 모두가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하거나 보상하는 원칙인 비우월적 다양성(undominated diversity) 적용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에서 각출하여 별도로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같은 책: 74). 그러나 2010년의 논문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을 의료서비스(health care)의 확장과 강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Van Parijs, 2010: 17).

4)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들 간의 관계

지금까지 판 빠레이스의 분배정의의 세 주요원칙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 곧 실질적 자유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원칙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수단을 모두에게 ‘평등’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특히 최소수혜자의 장기적 기대치를 극대화하도록 분배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이러한 요청의 제도화로서 옹호하는 원칙이다. 두 번째, 곧 노력소득원칙은, 각자의 개별소득을 규제하는 원칙이다. 세 번째, 곧 공유원칙은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두가 무조건적·개별적으로 받는 소득, 곧 기본소득을 규제하는 원칙이다. 결국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에서 개인의 소득은 개별소득과 기본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소득은 노력소득 원칙에 의해 그리고 기본소득은 최소극대화 원칙 및 공유원칙에 의해 규제된다. 그런데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주요원칙 간의 연관성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세 원칙들은 서로를 전제하거나 보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분배정의론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공유원칙, 곧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게 되는 근거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 보자.

먼저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 곧 공유권 또는 공유원칙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언급하였듯이, 공유지란 자연자원이나 과학기술처럼 후손까지 포함하는 공동체 성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대상이다. 자연자원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듯이,²⁰⁾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서 공동소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동향유”(곽노완, 2010: 85)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공유지의 사용과 혜택을 정의롭게 규제하기 위해, 무엇보다 명확한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관료나 특권적 지위를 가진 개인의 자의적 처분을 막기 위

20) 예를 들어 맑은 공기와 물, 대륙 등을 인류의 소유물로 보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당하지 않다.

해, 법적·형식적 소유권을 ‘공동’ 또는 ‘모두’로 설정하고(곽노완, 2016: 184 참조), 이 소유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소유권이란 일련의 권리들의 묶음이다. 대표적으로 사용권과 처분권 및 수익권을 들 수 있다(강남훈, 2015: 141). 모두의 소유로서의 공유지에 대해 이 권리들을 적용하면,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 곧 공유권 또는 공유원칙은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 및 수익권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공유원칙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공유지의 처분이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함을 명시함으로써 공유지에 대한 자의적 처분을 방지한다. 그런데 평등한 공유권 또는 공유원칙은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은 직접적으로 함축하지만, 평등한 수익권은 그렇지 않다. 공유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해 살펴보자.²¹⁾

첫째, 공기나 공용도로 및 무상의 보통교육을 통해 전수받는 읽기/쓰기 같은 유형의 공유지식처럼 그 사용이 직접적인 개인적 소비가 되는 공유지가 있다. 이 경우 공유지는 현물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 모두의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 및 수익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권정임, 2016: 39 참조).

둘째,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생산수단 공유지가 있다. 이는 다시 누구도 원칙적으로 사용에서 배제되지 않지만 희소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사용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 공유지식에 속해서 원칙적으로는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를 갖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산수단의 사용자나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²²⁾ 및 빅 데이터처럼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

21) 공유지의 분류 및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공유지로부터의 수익권 문제에 대한 이하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권정임, 2016: 39 이하를 참조하고 있다.

22)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은 실제로는 그 사용권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유사-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권정임, 2016: 52).

유지로 나눌 수 있다(같은 글: 41).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의 경우 이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 및 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를 따를 때, 노력소득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정당화된다.

그렇지만 공유자원 공유지 및 과학기술 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아무런 노동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득이 산출되는 경우를 사상할 때, 이 두 유형의 공유지에서는 노동 또는 생산적 노력이 더해짐으로서만 소득이 산출된다. 이는 이들의 경우 평등한 수익권이, 각자가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각자의 생산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공유원칙이 직접적으로는 평등한 사용권과 처분권만을 함축하며, 수익권을 무조건적으로 함축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재능이나 취향의 차이, 규모의 경제, 여러 우연적 요인 등으로 인해, 모든 공유자원을 개인별로 평등하게 나누어 직접 노동하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생산성을 저해하고 개인에 따라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생산적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황은 과학기술과 공유자원의 생산적 사용 문제 및 거기서 유래한 수익에 대한 분배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생태운동 같은 직접적인 생계유지와는 다소 무관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실질적 자유와 관련되는 분배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판 빠레이스는 자신의 분배정의의 원칙에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를 포함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원리를 시사한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그에게 이 원칙을 적용할 때, 각자가 자신이 사용권/처분권을 갖는 공유지에 직접 노동을 해야 하는 평등한 상태에 비해, 공유지를 불평등하게 사용하더라도 최소수혜자에게 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실질적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는 상태가 더 정의로운

상태다. 노동의지가 없는 자에게 이전되는 급여에 대한 톨스의 반론을 반박하면서 판 빠레이스가 시사하듯(Van Parijs, 1995: 95 이하), 이런 상태는 공유자원과 과학기술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대신, 순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음으로써 창출될 수 있다.²³⁾ 이때 이 임대료가 바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일자리 공유지의 경우, 그는 그 임대료 곧 “고용지대”를 임금에 대한 소득세 형태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자 한다(같은 책: 115).²⁴⁾

그런데 이때 주목하여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만으로는 기본소득제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따를 때, 노력소득원칙에 따른 ‘노력소득’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이 결국 공유원칙과 결합하여야만 기본소득제를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에서 공유원칙과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이 기본소득제를 각각 독자적으로 옹호하는 독립적인 원칙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원칙들임을 의미한다. 이때 노력소득원칙은 공유지와 공유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이 논리체계의 또 다른 전제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23) 이에 대해서는 권정임, 2016: 52 이하 참조

24) 판 빠레이스에 의하면, 오늘날 임금은 모두가 취직되는 노동시장청산 상황에서 보다 높다. 노동자들의 협상력이나 생산성 상승을 위한 높은 임금정책 때문이다. 실제 임금과 노동시장청산 상황에서의 임금의 차이에, 실업자나 좋지 못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 대해 갖는 선망을 더한 차액이 고용지대다. 그런데 현실의 일자리는 다양하고 변동성도 높아서, 고용지대 측정이 어렵다. 그가 고용지대 대신 임금에 대한 소득세를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이에 기인한다(Van Parijs, 1995: 107 이하).

정확하게 말해서 최소극대화된 권리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는 노력소득의 공정성을 위한 전제, 곧 기회의 평등을 충족시킨다. 자산의 불평등한 사용에서 오는 기회의 불평등을 기본소득의 지급에 의해 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노력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노력소득원칙과 양립한다. 결론적으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주요원칙은 서로를 전제하거나 보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분배정의론을 형성한다.

그런데 판 빠레이스가 기본소득제에 연계하여 구사하는 사유재산 옹호논변은 그의 분배정의 원칙, 특히 노력소득원칙을 위반하는 듯이 보인다. 그가 노력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제 역시 승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소절을 마무리하자.

판 빠레이스가 노력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제 및 이에 기초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²⁵⁾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의 최대화, 물론 지속가능한 최대화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실질적 자유의 수단을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또한 지속가능한 최대로 분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하한선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이상적으로 본다(Van Parijs, 2000: 3).²⁶⁾ 그런데 로머의 ‘착취론’에 대한 판 빠레이스의 기본적 수용이 시사하듯, 이때 노력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 곧 재산소유에서 파생되는 추가소득의 사유화에 대한 그의 승인이, 사유재산 중에서 그 소유

25) 실질적 자유지상주의를 전개하는 후기 판 빠레이스에게 자본주의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회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다(Van Parijs, 1995: 5).

26) 물론 판 빠레이스도 기본소득의 도입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의 결합도 가능하다고 본다(Van Parijs, 2000: 6).

자의 노력소득이 아닌 부분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권정임, 2013: 120 참조). 이 부분을 판 빠레이스는 사실상 ‘착취’로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부가된 조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착취’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 때 사유재산 및 사유재산이 낳는 추가소득에 대해 몰수에 근접하는 고율과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사유재산의 축적과 상속을 승인하고자 한다. 축적과 상속이 가능해질 때, 재산의 형성과 관리에 더 열정적이 되어 부 전체만이 아니라 기본소득 또한 최대한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Van Parijs, 1995: 101 이하). 나아가 그가 이렇게 형성된 사유재산제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기업 간의 경쟁에 기초하여 생산성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술혁신”에 유리하며(같은 책: 217), 따라서 기본소득의 증대에도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판 빠레이스에게서 노력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유재산은, 노력소득원칙과 공유원칙을 전제로 실질적 자유를 위한 모두의 기회를 가능한 한 평등하면서도 최대화하기 위한 최소극대화 원칙에 기초하여 승인된다. 즉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들에 종속되어 조건부로 승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유재산제에 대한 그의 승인과 견해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주의

지금까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그 세 원칙들의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이 체계에 따를 때 개인의 소득이 그 개인의 ‘노력소득’ 및 노력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는 부, 곧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으로 구성됨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기초하여 분배정의가

효율성과 생산성의 상승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는 사실 또한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세 원칙의 하나는 공유 원칙이다. 또한 이 원칙이 나머지 두 원칙과 모순적이지 않다. 이는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이 공유원칙에 기초하는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력소득원칙 및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과 결합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한 특정한 유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구성에 따를 때 노력소득원칙은 공유원칙과 대등하게 개인의 소득을 규정하는 원칙인 동시에, 공유지를 공유지가 아닌 것으로부터 구분한다.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은 공유원칙이 기본소득권을 보장하게 함과 아울러, 공유원칙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계기와 결합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은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된 유형의 하나로 재구성될 수 있다.²⁷⁾ 그런데 이때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중요한 주장의 하나, 즉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실질적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기본소득 또한 최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유원칙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재구성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필수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연구

27) 공유사회의 다른 유형으로는, 루소가 고전적으로 정식화하듯이, 모두가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서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생산하고 향유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Rousseau, 1762: 159). 판 빠레이스는 공유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과의 결합을 통해 이 두 유형의 공유사회보다 더 풍요로운 공유사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실 이는 롤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가 최소수혜자의 범주에서 자발적 실업자를 배제하는 한,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사회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위해서는 권정임, 2016을 참조하라.

를 통해,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킨다. 또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에 기초하는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창출한다. 실제로 그는, 기업의 노동자 또한 자본가와 자본지분을 공유하는 웨이츠맨(M. Weitzman)의 지분경제(share economy)(같은 책: 206)나 노동자들이 기업을 공유하고 경영자를 고용하는 제이(P. Jay)의 기업모형(같은 책: 209)에 미드(J. Meade)의 기본소득제(같은 책: 206)를 결합하는 “최적 자본주의”(같은 책: 192)라는 형태로, 공유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판 빠레이스의 이러한 시도는,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자본을 비롯한 사유재산에 합체된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함으로써 모순에 빠짐과 동시에 난점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판 빠레이스가 직·간접적으로 논의하는 공유지를 종류별로 살펴보자. 자연,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공유지식, 공적으로 소유하는 재화(publicly owned goods)(같은 책: 103), 사유재산에 합체된 공유지 및 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이 중 판 빠레이스가 현물기본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맑은 공기”(같은 책: 44) 같은 자연, 공유지식(같은 책: 104) 및 “공적으로 소유하는 재화”(같은 책: 103)다. 그런데 노동할 의사가 없는 “말리부 서퍼” 같은 개인 역시 토지에 대한 자신의 평등한 몫을 임대하여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논의가 시사하듯(같은 책: 98 이하), 그에게 자연은 현금기본소득의 원천으로도 파악된다. 즉 자연이 생산수단으로 기능하여 부와 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자신의 몫의 자연으로 직접적으로 생산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사실상 이 기회를 임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이 임대의 대가로서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지식의 경우에도 생산수단이나 물리적 자본을 가져야만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과학기술의 경

우, 그는 그 과학기술의 사용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최소화대화 원칙에 따라 현금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같은 책: 105 이하).²⁸⁾ ‘공적으로 소유하는 재화’에도 공유지식 공유지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공유지들이 기본적으로 현물 기본소득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아, 이들에게서 유래하는 현금기본소득의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같은 책: 104).²⁹⁾

또 다른 공유지는, 사유재산과 사유재산에 기초하여 창출되는 소득 중에서 순수한 노력소득이 아닌 부분, 곧 사유재산에 합체된 공유지³⁰⁾와 일자리 공유지다. 살펴보았듯이 그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위한 생산성 상승을 위해, 사유재산 및 사유재산이 창출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자 한다. 반면 일자리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고용지대를 전환한 소득세는 세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까지 고율로 과세하고자 한다. 세율증가와 함께 고용지대의 금전적 부분이 비금전적 부분으로 대체되어 고용지대가 100% 환수되기 전에 세율증가가 멈추기 때문이다(같은 책: 117 이하). 주목할 것은 판 빠레이스가 이때 노동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소득³¹⁾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여 이를 기본소득

28) 이는 판 빠레이스가 이 경우의 공유지식을 사실상 유사-공유자원으로 봄을 의미한다.

29)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서 이에 대해 논하는 부분에서 판 빠레이스는 자연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는 이 저작의 다른 곳에서 자연을 “외적 자산의 적절한 공동풀(pool)(Van Parijs, 1995: 100), 곧 공유지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0) 사유재산에 합체된 공유지로는 앞에서 논의한 자연, 과학기술, 공적으로 소유하는 재화 같은 공유지와 그 산물 외에 수세대에 걸쳐 축적되고 유증되어 오는 타인 노동의 산물 등을 들 수 있다. 타인의 노동의 산물은 노동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모두의 공유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1) 판 빠레이스는 자영업이 낳는 고용지대의 일반적인 근거로, 진입제한으로 인한 타인의 선망 등을 든다(Van Parijs, 1995: 118).

의 재원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이다(같은 글). 자영업이나 자본 역시 사회적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일자리 공유지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 판 빠레이스는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을 위해 결국 소득의 모든 형태에 대해 과세하고자 한다(같은 책: 119).

그런데 이처럼 소득세를 부가하는 경우에도 판 빠레이스는 자신이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제를 위해 유리하다고 보는 생산성의 상승을 위해,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에 유리하게 과세하고자 한다. 나아가 “안전한” 이자소득 보다 “위험한” 배당소득에 유리하게 과세하고자 한다(같은 책: 119). 이러한 그의 정책은, 같은 이유로 사유재산이 창출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그의 기본입장에 일관된다.

그렇지만 이처럼 자본을 비롯한 사유재산에서 유래하는 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대한 고율과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판 빠레이스의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첫째, 이 정책은 분배차원에서 정의롭지 않다. 지대, 부동산 양도차익 등과 같은 자본과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에서 비롯하는 소득의 많은 부분은 사유재산가의 노력소득이 아니라 불로투기소득이다(곽노완, 2009: 26). 판 빠레이스는 국내총생산 통계에 계상되지 않는 상당한 불로투기소득³²⁾을 간과하는 동시에, 재산소득에 대해 노동소득 보다 낮은 세율을 부가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정의롭지 않다.

둘째, 이처럼 불로투기소득을 포함하는 재산소득 보다 노동소득의 과세율을 높이면, 노동동기보다 불로투기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곽노완, 2010: 171). 따라서 이러한 과세정책을 통해 판 빠레이스가

32) 예를 들어 부동산 및 증권양도 차익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합법적으로 국내총생산 통계에 계상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의 많은 부분도 국내총생산 통계에 계상되지 않는데, 이는 불법적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곧 최대의 기본소득을 위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의 과세정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때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관련된 관 빠레이스의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그의 의도, 곧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한 효율적·생산적인 경제체제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의 지급을 목표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한 효율적·생산적 경제의 창출은 그 자체로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으로 재구성하는 이 글의 관점에 따를 때, 그 원인은 무엇보다 생산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관 빠레이스가 자본을 비롯한 사유 재산에 합체된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하면서, 광범한 공유지의 사유화를 과소평가하고 사유화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소득 또한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공유지의 사유화에 기초하는 막대한 불로투기소득의 수탈³³⁾에 대해 간과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지대나 부동산 양도차익 등으로 예시할 수 있듯이, 현존하는 불로투기소득의 많은 부분은 바로 공유지의 사유화에 기초하고 있다.

관 빠레이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여, 그의 최적 자본주의보다 효율적·생산적이면서 분배정의, 특히 공유주의 분배정의 관점에서 보다 정의로운, 대안적 공유사회를 모색해 보자.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광노완의 모형을 들 수 있다. 이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적 지분을 인수하여 생산수단을 100% 공유로 전환한 후, GDP를 50:50의 비율로 노력소득³⁴⁾과 기본소득으로 지

33) ‘착취’가 직접적인 노동과정을 통한 빼앗음이라면, ‘수탈’은 “직접적인 노동 밖의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빼앗김을 총괄하는 개념”(광노완, 2010: 164)이다. 지대수취는 대표적인 수탈의 예다.

급하는 모형이다. 공유지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불로투기소득을 취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소득을 인정하여 현존 사회에서보다 강한 노동 동기를 부여하는, 합리적·효율적·공정한 모형이다(곽노완, 2006: 69 이하, 2010: 171 이하). 따라서 공유원칙과 노력소득원칙만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 또한 충족하는 모형, 즉 이 글에서 재구성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세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형이다.

그렇지만 이 이상적인 대안은 무엇보다 그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난점을 갖는다. 이 모형은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형태로, 그것도 ‘급격하게’ 이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의미에서 성공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서 개인의 안전을 보장했던 확실한 수단인 사유재산, 물론 생산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유재산의 해체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모형은 다수의 동의 받기 어려운 대안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대안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전문기구를 통한 사회총자본의 대략 절반을 공유화(Meade, 1989: 38)할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인 이행정책을 제시하는(Meade, 1989: 35-38) 미드(J. Meade)의 모형을,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총자본에서 사적 지분과 공유지분이 대략 절반씩 차지하는 이 모형에서, 개인의 노력소득과 공유지분의 배당에 따른 기본소득은 따라서 곽노완 모형에서처럼 대략 50: 50으로 분할된다. 이는 이 모형이 분배공정성과 경제의 효율성에 있어서 곽노완 모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확보함을 의미한다. 즉 이 글에서 재구성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세 원칙을 모두 충족시

34) 곽노완의 개념으로는 ‘노력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다. 그는 판 빠레이스와는 달리 자본가의 기다림 같은 ‘생산적 노력’을 ‘노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키는 모형임을 의미한다. 미드 스스로도 이 모형의 창출 목적을 공유 지분을 통한 분배공정성의 확보와 적절한 규모에서의 사적 자본의 유지를 통한 효율성과 자유의 확보로 명시하고 있다(Meade, 1990b: 95). 나아가 그는 적절한 규모의 사적 생산수단의 인정을 통해, 그 소유자의 “안전”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모형의 장점으로 제시한다(Meade, 1964: 63).³⁵⁾

그렇지만 이 모형은 사적 자본을 유지함으로써 불로투기소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권정임, 2015: 36). 물론 미드는 기본소득의 재원의 하나로 누진적 소득세를 제안(Meade, 1989: 29)하고 상속과 선물에 대해 고율로 과세(같은 책: 34)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불로투기소득의 여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공유원칙에서 광노완 모형이 미드 모형보다 우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은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은 미드의 점진적인 이행모형을 채택하면서, 재정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최대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배정의에 부합함을 의미한다(권정임, 2015: 43 참조). 그렇지만 사회총자본의 반을 넘는, 가능한 최대의 공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노동유인과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소득과 기본소득의 분할 비율은 대략 50: 50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물론 이 글에서 재구성한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을 이 모형 역시 충족시킴을 의미한다.³⁶⁾

35) 판 빠레이스는 그의 최적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미드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짧게 언급하지만(Van Parijs, 1995: 206), 구체적으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드의 거시경제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36) 그렇지만 이 때 공유지분의 관리는 미드가 제안하듯이 사적 금융회사에 맡기면 안 될 것이다(Meade, 1989: 39).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4. 나가며

지금까지 판 빠레이스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구성하는 주요원칙을 최소극대화원칙과 노력소득원칙 및 공유원칙으로 제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이 세 원칙이 서로의 전제가 되거나 서로를 보완하면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분배정의론을 형성함을 보였다. 노력소득원칙에 따른 노력소득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각출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은 공유원칙과 결합하여야만 기본소득제를 충분히 정당화하고, 공유원칙 역시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평등한 소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공유지의 정체성은 노력소득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공유원칙과 최소극대화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기본소득은 노력소득원칙의 전제, 곧 기회의 평등을 충족시킨다. 동시에 기본소득은 노력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이므로 노력소득원칙과 양립하며 노동동기 또한 훼손하지 않는다.

둘째,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판 빠레이스가 동시에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였다. 공유주의 분배정의의 핵심원칙은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원칙이다. 그런데 이 공유원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 원칙의 하나이기도 하다. 나아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다른 두 원칙은 이 공유원칙과 함께

공유지분을 자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은 금융의 완전 공유화다. 미드 또한 1993년의 저서에서는 공유지분을 국가가 관리할 것을 제한한다(Meade, 1993: 12). 이는 이후 그가 공유지분을 사적 금융의 관리에 맡길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에 기초하여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를 때 노력소득원칙이 공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면,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은 공유원칙이 기본소득권을 보장하게 함과 아울러 공유원칙을 생산성 및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계기와 결합하여 결국 모두의 소득이 증대되게 한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론의 주장은, 공유원칙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재구성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이 글에서는 판 빠레이스의 최적 자본주의를 이러한 공유주의 분배정의론에 기초하는 공유사회의 한 유형으로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그가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소득원칙과 공유원칙을 전제로 모두의 기회를 가능한 한 평등하면서도 최대화하기 위한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 원칙에 기초하여 노력소득의 범위를 넘는 사유재산을 인정함을 보였다. 다른 한편, 그가 무엇보다 자본을 비롯한 사유재산에 합체된 공유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구획을 결여하면서 광범한 공유지의 사유화 및 사유화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공유지의 사유화에 기초하는 막대한 불로투기소득의 수탈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부정의한 분배만이 아니라 노동유인보다 불로투기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는 모순이 초래된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판 빠레이스의 공유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총자본의 대략 50%를 공유화할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인 이행정책을 동반하는 미드의 공유사회모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사회총자본에서 사적 지분과 공유지분이 대략 절반씩 차지하는 이 모형에서, 개인의 노력소득과 공유지분의 배당에

따른 기본소득 역시 대략 50: 50으로 분할된다. 이는 이 모형이 공유 원칙과 노력소득원칙에 따른 분배공정성과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모형은 사적 자본을 유지함으로써 불로투기소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재정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사회총자본의 가능한 한 최대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임을 부각하였다. 동시에 사회총자본의 반을 넘는 가능한 최대의 공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노동유인과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소득과 기본소득의 분할비율은 대략 50: 50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을 부각하였다. 즉 공유원칙과 노력소득원칙만이 아니라 실질적 자유의 최소극대화원칙 또한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부각하였다.

참고문헌

- 강남훈, 「새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12권 2호), 2015.
- 곽노완,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3권 2호), 2006.
- _____,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경제철학」, 『사회와 철학』(18호), 2009.
- _____,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 『시대와 철학』(21권 3호), 2010.
- _____,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시대와 철학』(24권 2호), 2013.
- _____, 「좋은 삶과 기본소득 - 기본소득을 향한 드워킨 분배정의론의 재구성」, 『도시인문학연구』(7권 1호), 2015.
- _____,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자유개념의 재구성」 『철학연구』(대한철학회 편) (135집), 2015.
- _____,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라움, 2016.
- 권정임, 「관 빠레이스의 후기기본소득론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시대와 철학』(24권 3호)11, 2013.
- _____, 「공유사회와 기본소득 - 미드의 아가토포피아 기획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26권 2호, 2015.
- _____,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27권 4호), 2016.
- Bollier, D.(2014), *Think Like a Commoner*(『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역, 갈무리, 2015).
- Meade, J.(1964), “Efficiency, Equality and the Ownership of Property”, in: Meade, J. E.,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3.
- _____(1989), *Agathot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 Abreden University

- Press, 1989.
- _____ (1993), *Liberty, Equality and Efficien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3.
- Mill, J. S. 1859. *On Liberty*, Dover Publications, Inc.
- Rawls, John(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_____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ition), (『정의론』(황경식 역), (주) 이학사, 2013.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Rousseau, J. J.(1762), 『사회계약론』(최석기 역), 동서문화사, 2014.
- V. Parijs, Philippe(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_____ (2000), “A Basic Income for All”, in: Cohen, J./ Rogers, J.(ed.),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eacon Press, Boston, 2001.
- _____ (2003), “Hybrid Justice, Patriotism and Democracy”, in: A. Reeve/A, Williams(ed.), *Real Libertarianism Assessed*, Palgrave Macmillan.
- _____ (2006),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분배의 재구성』(액커만/알스토틀/판 빠레이스 외 지음, 너른복지모임 연구 옮김, 나눔의 집, 2010).
- _____ (2010),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revised and unpublished.

Three Principles of the Real-liber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nd a Sharing Society

Kwon, Jeong-Im

Three principles of the real-liber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are as follows; the leximin principle of real freedom, the principle of income resulting from one's pure productive efforts and sharing principle, i.e., the equal right of all to external assets which is not the result of one's pure productive efforts. In relation to these three principles, this paper studies on following further themes.

First, based on the rigorous studying on these three principles, the real-liber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is reconstructed as a logically consequent system of these three principles. In this system, these principles function as premise for one another or complement one another.

Second, this paper shows that van Parijs also develops a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for commons through his endeavor to develop the real-liber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The core principle of the distributive justice for commons is the principle of commoning or sharing. The other two principles of the real-libertarian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construct a consequent system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the principle of commoning. Connected to this, this paper reconstructs a new form of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for commons.

Third, based on this reconstruction and the critical study on the optimal capitalism of van Parijs, this paper presents that van Parijs suggests in fact a prospect for a sharing society which realizes the distributive justice for commons. Simultaneously, this paper shows th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of his sharing society, i.e. his optimal capitalism which result from his lack of the clear assesment and distinction of commons. As the alternative perspective for the sharing society of van Parijs, this paper presents the model of sharing society of J. Meade, but in a critically modified form.

Subject Sphere: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theory of basic income

Key Words: Van Parijs, Real-libertarianism, Sharing Society, Commons, Basic Income